

##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60일	
신청인	기관명 (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
	주소(법인소재지)	전화번호		
신청내용	교육 분야	교육과정	교육 정원	
	운전면허 교육		일간	연간
		[ ] 고속철도차량		
		[ ] 제1종 전기차량		
		[ ] 제2종 전기차량		
		[ ] 디젤차량		
		[ ] 철도장비		
	[ ] 노면전차			

「철도안전법」 제16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**국토교통부장관**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운전교육훈련계획서(운전교육훈련평가계획을 포함합니다)</li> <li>2. 운전교육훈련기관 운영규정</li> <li>3.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(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</li> <li>4. 운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·학력·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담당업무</li> <li>5. 운전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 내역서</li> <li>6. 운전교육훈련에 필요한 철도차량 또는 모의운전연습기 등 장비 내역서</li> <li>7. 운전교육훈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</li> </ol>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### 처리절차

